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2974호

제출년월일 2022. 3. .
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

1. 제안이유

○ 관내 개별입지공장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,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사자 교통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- 교통여건이 좋은 산업단지 내 청년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,

-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개별입지공장을 대상으로 교통비의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으로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업종사자 및 청년노동자 정의 추가(안 제2조)
나. 지원사업 대상에 기업종사자 추가(안 제3조)
다. 청년노동자 교통비 등 지원 조항 추가(안 제10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나.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다. 예산조치 : 만15세~34세 내국인 청년노동자 약 5,000명 대상 월 50,000원 교통비 지원 시 1년 기준 3,050백만원 소요
(2022년의 경우 반기 시행으로 1,525백만원 소요)
라. 그 밖의 사항
1) 입법예고
가) 예고기간 : 2022. 1. 28. ~ 2022. 2. 17. (20일간)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부서협의 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없음

나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 : 협의완료

김포시 조례 제 호

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기업 종사자”라 함은 관내기업에 소속되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8. “청년 노동자”라 함은 관내기업 종사자 중 만 15세 ~ 만 34세의 내국인을 말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단체”를 “단체 및 기업 종사자”로 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청년 노동자 교통비 등 지원) 시장은 관내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기업지원과
입안자	실·과·소장 성 명	기업지원과장 송천영
	팀 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팀장 최태열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김병기(☎2297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“기업 종사자”라 함은 관내기업에 소속되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<신 설>	8. “청년 노동자”라 함은 관내기업 종사자 중 만 15세 ~ 만 34세의 내국인을 말한다.
제3조(기업활동 촉진 · 지원 사업)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3조(기업활동 촉진 · 지원 사업) ----------.
1.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 · 재정 지원사업	1. ---------- 단체 및 기업 종사자----------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0조의3(청년 노동자 교통비 등 지원) 시장은 관내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